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3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박성민·강민국·구자근

박대출 • 조경태 • 김위상

박정하 • 이헌승 • 서일준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 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 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 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 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300억원"을 "300억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가업 상속하는 경우에는 4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 을 "400억원(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00억원"을 "600억원(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 상속하는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72조의2제1항제1호 중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금액이 5천억원(「지방자치분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400억원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경우: <u>600억원</u>
- ② ~ ⑩ (생 략) <u><신 설></u>

<신 설>

1. -----

300억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 하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40 0억원]

- 2. -----
 - 400억원(기회발전특구에서 가 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 원)
- 3. -----
 - ------<u>600억원(기</u> <u>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u> 경우에는 1천억원)
- ② ~ ⑩ (현행과 같음)
-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회발 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 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가 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 제7 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 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업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외 의 지역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공 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 속세에 가산한다.

∦72조의	12(가업상속	구에	대한	상속
세의	납부유예)	1		
1.				
	가업(중소	기업	으로	한정

하다)은	상속받았을	거
ソリノコ	0 コームコ	~ス'

한다. 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중소 기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 ⑧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